제 11 호
2018년1월16일(화)

여 수 시 보

시 정 방 침

1. 함께하는 소통시정
1. 활력있는 지역경제
1. 수준높은 교육복지
1. 앞서가는 해양관광
1. 걱정없는 안전사회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8-1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8-75호 도로지정공고(화장동 292-3번지) /4

○ 여수시 공고 제2018-131호 2018년 쌍봉시장(공설) 시장사용자 모집 공고 /5

회람								

여수시 고시 제2018-1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 합니다.

승인(신고)번호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8-1	2018. 1.15.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508(역삼동,GS타워 36층)	(재)GS칼텍스재단	2018. 2. 1.	2019. 4.30.	여수시 웅천동 1692번지~웅천동 1626-1번지 지선 해상	장도 보행량 축조

2018. 1. 16.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고 제2018 - 75호]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화장동 292-3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계		136	4	547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화장동	294-13		4	168	〃	
	292-5		4	323	〃	
	294-23		4	56	〃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061-659-4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1. 15.

여 수 시 장

여수시공고 제2018-131호

2018년 쌍봉시장(공설) 시장사용자 모집 공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기간 만료 점포에 대하여 시장사용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2018. 1. 16.

여 수 시 장

1. 신청(접수)기간 : 2018. 1. 17. ~ 2018. 1. 31.(15일간)
2. 신청장소 : 전남 여수시 여문2로 124, 여수시청 문수청사(지역경제과)
   - '18. 1. 17.(수) 9:00 ~ '18. 1. 31.(수) 18:00 방문 접수 분에 한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지역경제과(061-659-4547, 4548)로 문의
3. 신청서류
   - 시장사용 신청서(별지 4호 서식),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용신청 유의서(별지 2호), 허가조건 열람확인서(별지 5호), 추첨보증금 납입확인서
4. 점포별 위치와 면적·내역(쌍봉시장 평면도 참고)

층수	호 수	면 적 (㎡)	1년 시장사용료(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추첨보증금(원) (시장사용료10%)	비 고
1층	22호	52.97	1,899,370	189,930	
1층	1호	26.81	672,930	67,290	

5. 시장사용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추첨
   - 예외 : 공개모집에 점포별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는 공개추첨 생략

6.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 공고일 현재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이상자

7. 시장사용료 납부방법

-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9.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6조제1항에서 산출한 사용료의 2년분
- 보증금의 처리 및 반환 절차는「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10. 시장사용의 허가기간 : 3년, 갱신 1회 가능 기간 2년

11. 시장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 허가조건 제10조 참조

12. 시장사용신청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

- 2018. 2. 5.(월) 15:00, 여수시청 문수청사 지역경제과, 공개추첨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3.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 그 밖에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14. 추첨보증금액 및 추첨보증금 납부 방법

- 추첨보증금 : 시장사용료의 10%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납부
-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쌍봉시장 평면도

(1층)

숫자 - 점포호수

<table>
<tr><td colspan="3">13(2)</td><td>12</td><td>11</td><td></td><td>계 단</td></tr>
<tr><td colspan="5"></td><td>1</td></tr>
<tr><td colspan="3">19</td><td rowspan="2">8</td><td rowspan="2"></td><td>2</td></tr>
<tr><td colspan="3">20</td><td>3</td></tr>
<tr><td colspan="3">21</td><td rowspan="2">9</td><td rowspan="2"></td><td>4</td></tr>
<tr><td colspan="3">22</td><td>5</td></tr>
<tr><td colspan="3">23</td><td rowspan="2">10</td><td rowspan="2"></td><td>6</td></tr>
<tr><td colspan="3">24</td><td>7</td></tr>
<tr><td colspan="7"></td></tr>
<tr><td>18</td><td>17</td><td>16</td><td></td><td>15</td><td>14</td><td>계단</td></tr>
</table>

※ 추첨대상 점포

(2층)

숫자 - 점포호수

<table>
<tr><td colspan="3" rowspan="3">25호</td><td>계단</td></tr>
<tr><td>창고</td></tr>
<tr><td>화장실</td></tr>
<tr><td>창고</td><td>휴게실</td><td>사무실</td><td>계단</td></tr>
</table>

[별지 제2호]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여수시가 개설한 시장에 대하여 사용신청을 함에 있어 그 신청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력) 이 유의서는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장사용신청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시장사용허가신청서 내용의 일부가 된다.

제3조(시장의 위치 등 확인) 시장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제4조(시장사용자 선정 공개모집 신청) 시장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1. 시장사용신청서(별지4호서식)
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열람 확인서(별지5호서식)
4. 추첨보증금
5. 기타 필요한 서류(공개모집공고문 내용에서 요구한 서류)

제5조(추첨보증금) ① 시장사용자 공개모집 신청시에는 여수시장이 결정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시장사용자로 선정된 후 사용료 및 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시장사용허가신청) ① 시장사용자 공개모집에 의하여 당첨된 자는 7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의 사용허가는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함으로써 확정된다.

제7조(사용료) 시장의 사용료는 시장사용료 납부고지서로 여수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사용신청을 무효로 한다.

1.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도달되지 아니한 신청
2. 정하여진 일시까지 정하여진 장소에 추첨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인(세대원을 포함한다)이 2건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여수시가 제시한 조건에 위반한 신청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

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
2. 추첨 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
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
4. 기타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③ 시장사용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가 7일 이내에 시장사용허가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당첨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기납부한 추첨보증금은 여수시에 귀속된다.

④ 시장사용을 위하여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자와 시장사용허가신청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별지 제3호]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쌍봉시장 점포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 등의 납부) 사용료는 1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사용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8조제4호 및 제17조 제1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보증금)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4호 및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를 다음 사용자의 사용허가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사용료의 잔액을 반환하며, **제1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취급하여야 하며,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7조(공공요금 등) 시장운영관리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료, 폐기물처리 수수료,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 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여수시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2.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1개월 이상 휴업·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제9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권의 양도 또는 대여

2.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설비의 추가 설치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여수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허가 후 1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휴업하였을 때

5.「여수시 공설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여수시장의 명령을 위반할 때

6.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장이 시장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할 때

7.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제11조(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전의 시설과 같이 원상회복하고 여수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수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여수시장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을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여수시장이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 손해배상)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여수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3조(연고권 주장배제) ①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해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 허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4호]

시장사용 신청서

시장구분	■ 상설시장			
사용자 (대표자)	법인명 (단체명)		법인등록 번 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시 장 명 칭		시장	종 류	(점포)
상 호 및 호 수		제 호	허가면적	㎡
사 용 기 간 (영 업 시 간)		년 월 일 ~ 년 월 일(개월) (: 시부터 : 시까지)		
사 용 료		원	보 증 금	원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5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장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주민등록 등본 2. 지방·국세 완납증명서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2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5호]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및 허가조건 열람 확인서

쌍봉시장 사용을 신청함에 있어 여수시가 제시한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및 허가조건에 대한 모든 조항을 잘 읽어보고 이해하였기에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여 수 시 장 귀하